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23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 김준형 · 서왕진 · 신장식

이해민 • 이재강 • 박은정

정혜경 • 박지원 • 권칠승

김재원 · 강경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촉신고의 경우 접촉의 목적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민간차원의 인도적·비정치적 목적의 접촉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일률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낮고,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한 안부·소식 교환과 같이 민간차원의 인도적·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등).

법률 제 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가족인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는 경우
- 2. 단순히 소식과 안부를 주고받기 위하여 접촉하려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제28조의2제1항제3호 중 "제9조의2제4항"을 "제9조의2제5항"으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접촉하려		
	<u>는 경우</u>		
	2. 단순히 소식과 안부를 주고		
	받기 위하여 접촉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목적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u>②</u> ~ <u>④</u> (생 략)	$\underline{3} \sim \underline{5}$ (현행 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와 같음)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u>⑥</u>		
인정할 경우 <u>제4항</u> 에 따른 유	<u>제5항</u>		
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u>⑥</u> (생 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	제28조의2(과태료)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 략)
- 3. <u>제9조의2제4항</u> 또는 제17조 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 한 자
- 4. ~ 6. (생 략)
- ②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9조의2제5항-----

- 4.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